

| | |
|--------------|----------------|
| 의안번호 | 제 640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11인 |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40 |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발 의 자 : 이옥규, 임영은,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송미애, 박우양, 허창원,
이상식, 장선배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지역서점의 지원(안 제6조)
 -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서점 인증(안 제7조)
- 지역서점위원회(안 제8조~제13조)

○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안 제14조)

-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 2020. 12. 24. ~ 2021. 1. 3.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인증)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2. 충청북도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표창) 도지사는 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재정수반 요인

- 조례안 제6조, 제8조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 발생

3.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당초 의원발의에 따른 비용추계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 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작성 제외 통보됨에 따라, 타 시도 유사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

4. 비용 추계결과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구분 | | 합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세입(도비) | | 100,500 | 1,700 | 9,700 | 29,700 | 29,700 | 29,700 |
| 세출 | | 100,500 | 1,700 | 9,700 | 29,700 | 29,700 | 29,700 |
| 사업명 | 지역서점 홍보물 제작 (안 제6조 3호) | 12,000 | | 3,000 | 3,000 | 3,000 | 3,000 |
| | 지역서점 문화전 (안 제6조 2호) | 20,000 | | 5,000 | 5,000 | 5,000 | 5,000 |
| | 충북 서점학교 (안 제6조 4호) | 60,000 | | | 20,000 | 20,000 | 20,000 |
| | 위원회 참석수당 (안 제8조) | 7,0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 | 위원회 회의자료 (안 제8조) | 1,5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조례안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은 기존 추진중인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수립(5년 단위)에 수반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1호는 경제기업과 기추진사업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20년 예산 5,270백만원)에 따라 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2호 내지 제4호의 각 사업은 상기 표와 같이 비용추계가 예상되며, 추계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년 경기도, 부산광역시 기 추진사업 참조

| 구 분 | 예 산 | 세부내역 |
|------------|--------|-------------|
| 합 계 | 29,700 | |
| ○ 위원회 참석수당 | 1,400 | 100천원×7명×2회 |
| ○ 위원회 회의자료 | 300 | 150천원×2회 |
| ○ 지역서점 홍보물 | 3,000 | 3,000천원×1회 |
| ○ 지역서점 문화전 | 5,000 | 1,000천원×5개소 |
| ○ 충북 서점학교 | 20,000 | 20,000천원×1회 |